

가계대출 추가약정서 변경안내

1. 약정서명 : 가계대출 추가약정서

2. 변경의 필요성 및 주요 변경내용

- (1) 추가약정서 선택항목 변경 : ‘급여이체 무보증대출 약정용’ 삭제
- (2) I. 금리적용 선택용 - 제1조 금리감면, 가산 : 요구불통장 평잔으로 인한 금리감면 항목 삭제
- (3) II. 급여이체 무보증대출 약정용 : 전체삭제
- (4) III.우량기업 신입직원용, IV.채권유동화 약정용,V.통장대출 추가약정용,VI.기부금대출,
VII.기타특약사항 : 번호 채상
- (5) IV.채권유동화 약정용 : 사전승낙 약관조항 수정
- (6) VII.기타특약사항 :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취급시 퇴직금 이체계좌 당행지정 문구 삽입

3. 신규조건대비표 (변경의 경우)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
추가약정서 선택 항목	<input type="checkbox"/> 금리적용 선택용 <input type="checkbox"/> 급여이체 무보증대출 약정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우량기업 신입직원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유동화 약정용 <input type="checkbox"/> 통장대출 추가약정용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 대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특약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금리적용 선택용 (삭제) <input type="checkbox"/> 우량기업 신입직원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유동화 약정용 <input type="checkbox"/> 통장대출 추가약정용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 대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특약사항
I.금리적용 선택용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이 지정한 아래의 요구불 통장(이하 ‘요구불통장’이라고 함)의 매월 월평균잔액이 ()원 이상을 유지 하는 조건으로 ()%p 감면 (▶ 요구불 통장 계좌번호 :)	(삭제)
II. 급여이체 무보증대출 약정용	II. 급여이체 무보증대출 약정용 제1조 기한이익 상실 차주 본인에 관하여 해당 급여 자동이체의 해지 시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, 차주 본인은 은행에 대한 은행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, 곧 이를 상환하거나 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 또는 인적담보(연대보증인 입보)를 제공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 조치에 바로 응하기로 합니다. 제2조 자동연장 해당 무보증대출의 기일이 도래한 경우 관련 급여자동이체가 해지 되지 아니하고, 거래실적이 우수할 경우 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금상환 없이 자동 연장할 수 있기로 합니다.	(삭제)
III. 우량기업 신입직원용	III. 우량기업 신입직원용	II. 우량기업 신입직원용

IV. 채권유동화 약정용	IV. 채권유동화 약정용 제 1 조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채권유동화를 위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 3 자에게 양도(신탁 포함)함에 대하여 <u>미리 승낙하며</u> , 은행의 대출채권 유동화업무에 관련된 제반 행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니다. 또한, 본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<u>채권양수인이</u>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하되,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통지를 실제로 받을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로 합니다.	III. 채권유동화 약정용 제1조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채권유동화를 위해 이 약정에 따른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3자에게 양도(신탁 포함)함에 대하여 <u>서면으로 통지 수령시</u> , 은행의 대출채권 유동화업무에 관련된 제반 행정적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니다. 또한, 본인에 대한 <u>서면 통지시</u> 채권양수인이 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로 하되,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통지를 실제로 받을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로 합니다.
V. 통장대출 추가약정용	V. 통장대출 추가약정용	IV. 통장대출 추가약정용
VI.기부금 대출	VI. 기부금 대출	V. 기부금 대출
VII.기타 특약 사항	VII.기타 특약 사항 <input type="checkbox"/>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본 대출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 <u>급여를 이체할</u> 금융 기관을 은행의 본인 계좌로 지정하여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하며, 향후 급여이체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전화, SMS, 우편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금리 인상할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본 대출 금리에 ()%를 가산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기로 합니다.	VI.기타 특약 사항 <input type="checkbox"/>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본 대출이 전액 상환되기 전에 <u>급여 및 퇴직금 이체 (퇴직금 이체는 용자추천서에 의한 한도 산정시)</u> 금융 기관을 은행의 본인 계좌로 지정하여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하며, 향후 급여이체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전화, SMS, 우편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금리 인상할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본 대출 금리에 ()%를 가산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기로 합니다.

4. 시행일자 : 2011.5.11